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7 - 696호

의 안 명 공모창업투자조합 운영 등 중소·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

대 상 기 관 중소기업청, 금융위원회

의결연월일 2017. 6. 26.

주 문

「공모창업투자조합 운영 등 중소·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청장,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7년 6월 26일

위원장 성 영 훈

위 원 김 인 수

위 원 박 경 호

위 원 이 상 민

위 원 신 근 호

위 원 박 계 옥

위 원 김 현 철

위 원 김 종 보

위 원 허 용 석

위 원 전 준 경

위 원 이 호 용

위 원 이 재 경

<별 지>

공모창업투자조합 운영 등 중소·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

2017. 6.



국민권익위원회

목 차

I. 추진배경 및 경과	1
II. 일반현황	2
III. 문제점 분석	5
① 창업 중소·벤처기업 자금조달 등 지원 미흡	5
② 중소·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미흡	6
③ 공모조합 관련 하위 법령체계 미흡	8
④ 온라인 소액투자 및 개인투자조합 제도 운영 미흡	9
IV. 개선방안	10
① 중소·벤처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령 정비	11
② 중소·벤처기업 온라인 및 개인투자 관련 규제 개선 ..	11
V. 조치사항	13

붙임 : 관련 통계 현황

I. 추진배경 및 경과

-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제19대 대통령 정책 공약 : 중소벤처기업 창업 생태계 조성
- 국민신문고 제도개선 요청 민원 접수('16. 11월)
 - 창업 중소기업 투자 활성화 관련 하위 법령 정비 요청

□ 추진배경

- 최근 중소·벤처기업 투자시장의 활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투자재원 대부분은 기관 투자자 및 창업투자조합 중심의 사모펀드로 형성
 - ※ '17년 1월 기준, 중소·벤처기업 33,387개, 투자규모 : 약 17조 2천여억원(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8조원), 한국벤처투자조합 9조1천억원, 개인투자조합 1천1백억원)
- 그러나 초기 창업자나 벤처 기업가들은 자금을 조달하는데 있어 담보대출 등 불합리한 규제 등으로 사업 투자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 창업자에 대한 정책자금, 담보대출 등 중소·벤처기업 지원 미흡
 - 중소기업지원펀드도 융자와 보증에 의존하고, 기술평가 부문에 소극적
 - ※ 기관 투자자 중심의 중소·벤처기업 투자로 활성화 미흡
 - 자산규모 1,000억 이상 벤처기업 중 벤처투자를 받지 못한 기업은 56%에 달함
 - ※ 투자활성화를 위한 공모창업투자조합 관련 하위 법령 체계 미흡
 - 공모조합 결성에 대한 근거를 두고 있으나 하위 법령 미정비
- 이에 중소기업,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하위법령 정비와 다양한 형태의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추진경과

- 제도운영 실태조사(~'17.3.) 및 개선초안 마련(~'17.4.)
 - ※ 대상 : 중소기업청,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단체, 전문가, 실무자 등
- 개선방안에 대한 기관협의 및 전문가 간담회 등 개최(~'17.6.)
 - ※ 국정기획자문위 관계부처 실무회의(6.9), 전문가 간담회(6.15)
- 제도개선안 위원회 상정 및 권고('17.6월)

Ⅱ. 일반현황

□ 관련 법령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하 창업지원법)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
- 자본시장법

□ 중소·벤처기업 현황

○ 유형별

구 분	벤처투자 기업	연구개발 기업	기술평가 보증기업	기술평가 대출기업	예비벤처 기업	합 계
업체수	1,169	1,944	26,871	3,329	74	33,387
비율(%)	3.5	5.8	80.5	10.0	0.2	100

○ 연도별 창업현황

구 분	2000	2001	2006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1월
기업수 (누계)	8,798	11,392	12,218	15,401	18,893	24,645	26,148	28,193	29,135	29,910	31,260	33,360	33,387

※ 출처 : 벤처인(http://www.venturein.or.kr/venturein/go_page.jsp)

※ 벤처기업수 2만개 돌파 : 2010.5.19.(20,044개) ※ 벤처기업수 3만개 돌파 : 2015.1.13.(30,021개)

□ 중소·벤처기업 창업투자조합 현황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현황

구 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창업지원법 시행령 제14조)	한국벤처투자조합 (벤처기업법 시행령 제3조의6)	개인투자조합
출자금	출자금 총액이 20억원 이상	30억원 이상	1억원 이상
1좌당 최소금액	100만원	좌동	좌동
조합원수	유한책임조합원의 수가 49인 이하	"	"
GP의 출자비율	출자금 총액의 100분의 1 이상	"	100분의 5
존속기간	5년 이상	"	"
결성 조합수 (2016년말 현재)	401개 조합 (7조 8,196억원 규모)	209개 조합 (9조 1,446억원 규모)	260개 조합 (1,180억원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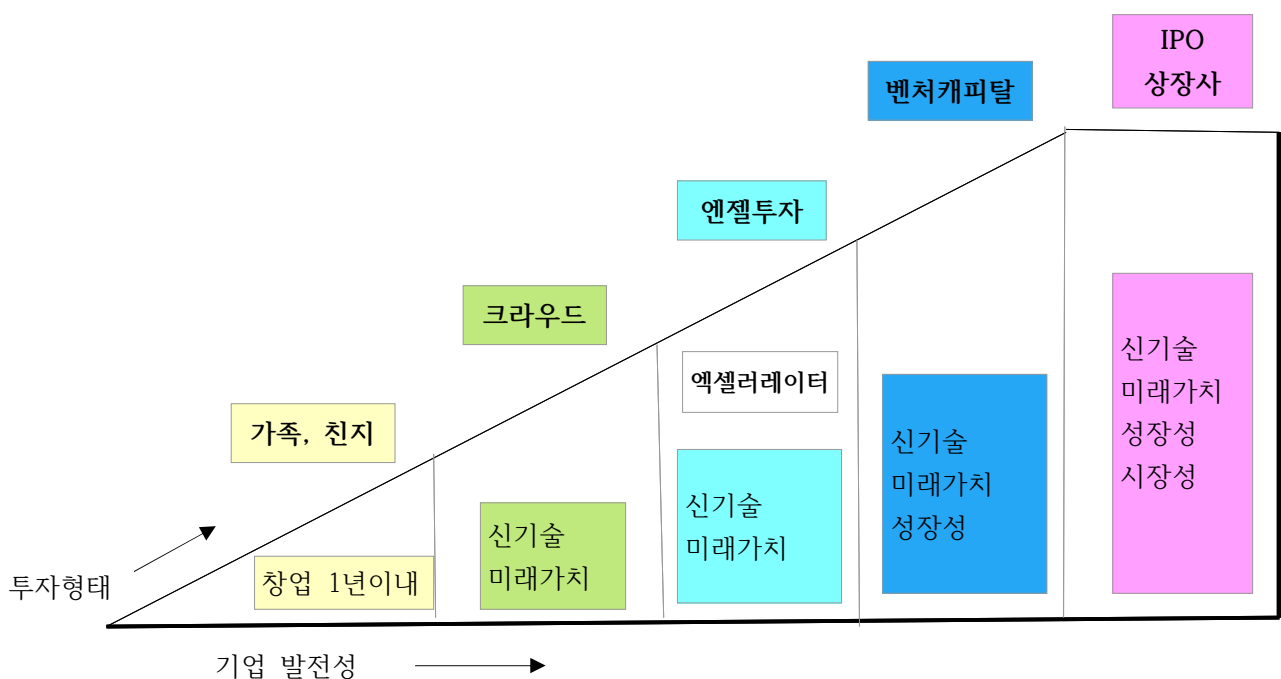
○ 공모창업투자조합 현황 : 공모조합으로 결성된 실적 없음('07년 8월 이후)

구분	관련 조항	도입 시기	취지	개정 당시 부처 의견
창업 지원법	제20조 제3항 (조합의 결성)	2009.12.30	복수 업무집행 조합원 도입시 예외로 적용	자본시장법(금융위 소관 의원발의) 개정 으로 타법 일괄 개정(중기청 의견 없음)
	제43조 제1항 (등록의 취소 등)	2007. 8. 3	자본시장법 통합제정에 따른 타법 개정 필요	"
	제47조의2 (공모조합 특례)	2007. 8. 3		
벤처 기업법	제4조의3 제4항 (조합의 결성 등)	2010. 1.27	복수 업무집행 조합원 도입시 예외로 적용	"
	제4조의8 (공모조합의 특례)	2007. 8. 3	자본시장법 통합제정에 따른 타법 개정 필요	"

* **사모 및 공모의 개념** : 자본시장법상 "모집"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하고 "사모"란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으로서 모집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자본시장법 제9조 제7항 및 제8항). 공모는 법상 "모집"에 해당.

** **공모조합**(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은 자본시장법 제9조 제19항에 의한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창업투자조합 및 한국벤처투자조합

【 창업 중소·벤처기업 투자 형태 】



구분	주요 내용	비고
클라우드펀딩 (온라인 소액 투자)	■ 일반투자자 : 기업당 200만원/ 연간 500만원 ■ 소득요건 구비자 : 기업당 1천만원/ 연간 2천만원 - 개인 : 금융소득종합과세자(2천), 소득 1억원 이상자 - 법인 : 자기자본 10억 ■ 전문투자자/기관 : 한도없음	
엔젤투자 (개인투자회사)	■ 엔젤투자협회(엔젤투자지원센터, 엔젤조합 100여개) ■ 전문엔젤 : 최근 3년간 1억이상 벤처기업 투자실적이 있는 자 - 7년 이내 기업	사모펀드
벤처캐피탈 투자	■ 한국벤처투자(주) 매칭 투자(30~60% 내외) - 창업투자조합 재원과 한국벤처투자(주) 정부예산으로 펀드 구성	모태펀드
	■ 110여개 창업투자 조합 구성 ■ 벤처기업 투자형태 빈익빈 부익부	사모펀드

※ 금융위(성장사다리펀드), 농림식품부(농식품투자조합)

□ 2016년도 벤처펀드 실적

구분	실적
신규 벤처펀드	■ 3조1998억원(전년 대비 +17.9%) : 3조원대 최초 진입 - 신규 벤처투자액 : 2조1503억원 - 설립 3년 이내 창업 초기기업투자 비중도 전년 대비 5.7% 증가
민간자본 벤처 펀드 신규출자	■ 최초로 2조원 돌파(모태펀드, 산업은행, 성장사다리펀드 등 공모펀드 제외) - 전체 벤처펀드 조성액 중 63.1%(전년 대비 + 8.1%)

※ 출처 : 중소기업청, '2016년 신규 벤처펀드 조성고 신규 벤처투자 동향'

□ 2017년도 벤처투자 전망

구분	내용
정부	■ (정부목표) 역대 최고인 3조5,000억원 벤처펀드 조성 계획 ■ (금융위원회) 9400억 규모 성장사다리펀드 신규 조성 계획 -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 제도* 도입 예정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016.12. ■ (중소기업청) 올 1월 액셀러레이터 4개사 발표 - 역대 최고의 벤처붐 확산을 위해 모태펀드를 통한 벤처펀드 출자예산 확대 및 신규 민간 출자자 발굴 등 공격적인 벤처투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
민간	■ (증권사 등 투자금융업계) 수익 다각화에 고민하던 자본시장에서 벤처펀드 결성을 적극적으로 고려 ■ (금융투자협회) 벤처기업 등이 포함된 비상장 주식 정보 플랫폼 구축 중

Ⅲ. 문제점 분석

1 창업 중소·벤처기업 자금조달 등 지원 미흡

현 운영실태

- 창업자가 꼽은 애로사항 1순위가 자금조달(68.5%)
 - 초기 평균사업 종잣돈 4,660만원. 대부분 자체조달(74.3%), 민간 금융 융자(9.7%), 정책자금(3.2%) 등 외부 투자와 정부 지원 어려움
 - ※ 중소기업청 2015년 1인 창업기업의 실태 조사(복수응답)
- 창업에 대한 젊은이들의 부정적 인식
 - ‘창업에 관심 있다’고 응답한 20대와 30대는 각각 38.4%, 28.6%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가장 낮은 비율
 - 응답자의 75%가량이 우리나라를 ‘실패할 경우 재기하기가 어려운 사회’라고 응답
 - ※ 2015년 현대경제연구원의 ‘창업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문 제 점

- 중소·벤처기업 창업자들이 자금 조달과 투자 재원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자금 지원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여러 기관으로 분산되어 있음(컨트롤 타워 부재)
 - 자금 지원조건 심사시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의 기술력보다는 매출 실적에 비중을 두어 실제 벤처기업 투자 미흡(대다수 초기 창업자들은 보증, 담보 조건이 복잡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

○ 중소·벤처기업 기술금융 심사 지원체계 미흡

- 기술보증기금의 경우는 심사인력 1명이 6개월 동안 평균적으로 30건의 기술평가를 수행하는데 반해 한국기업데이터는 299건, 나이스평가정보는 160건으로 물리적으로 정상적인 기술평가가 어려운 수준
- 창조경제혁신센터 내 중소기업지원펀드도 용자와 보증에 의존. 최근 5년간 신용등급별 신규보증 상 신용등급 보통 미만 비우량기업에 대한 신규보증 비중은 전체의 4%에 불과(2015 국정감사 지적)

< '기술금융'에 대한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자료 >

- 기술금융대출을 통한 대출 규모는 2014년 12월말 8조9000억원에서 2015년 7월말 44조4000억원으로 급증
- 은행권의 기술금융 현황 : 기술금융 실적을 올리기 위해 기존대출을 기술금융으로 전환하는 등 소위 '무늬만 기술금융'인 경우가 많음. 순수 신용대출은 40%에 그쳤으며, 60%가 담보 및 보증 대출
 - 은행권의 기술금융 대출 중 75.4%는 기존 기업과의 거래임.
 - 은행이 기술금융을 지원한 기업은 우량 신용등급으로 분류되는 BBB등급 이상

2 중소·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미흡

현 운영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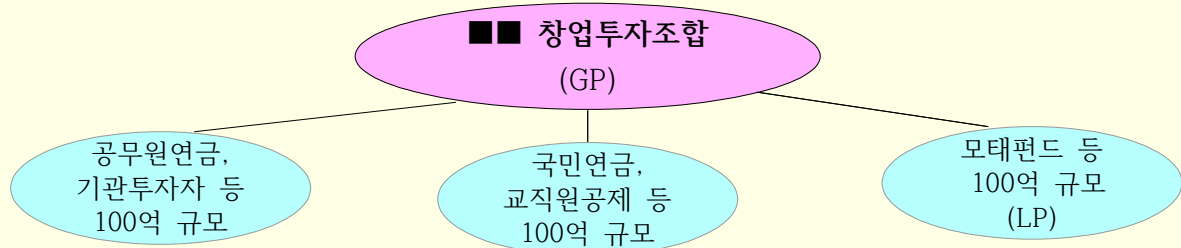
- 중소·벤처기업 창업지원 및 투자는 중소기업청이 관리 감독하고, 투자자 보호는 금융위에서 총괄
- 모태펀드 : 중소기업진흥공단 산하 한국벤처투자(주)에서 정부예산으로 유망 벤처기업에 간접투자(펀드에 출자)
- 사모펀드 : 창업투자조합에서 기관투자자(국민연금공단, 군인, 교직원 공제회 등) 조합을 구성하여 유망 벤처기업에 투자

【 중소·벤처기업 금융자본시장 투자 형태 】

구분	모태펀드	사모펀드	공모펀드
주관 부처	금융위, 중기청 등	금융위, 중기청 등	금융위
관련 법령	자본시장법, 개별법령	자본시장법, 개별법령	자본시장법
투자 재원	정부 예산	기관 투자자 자금	개인, 기관투자자, 법인
참여 형태	출자기관	은행, 증권사	은행, 증권사
투자자모집	출자기관	기관 투자자, 법인	개인, 기관투자자, 법인
조합원수	-	49인 이하	50인 이상
운용사	한국벤처투자(주)	자산운용사, 창업투자회사 등	크라우드 펀딩 (기업당 200만원 연간 500만원 한도)

- 중소·벤처기업 투자는 현재 모태펀드(한국벤처투자<주>), 사모펀드(창업투자조합)로 운영되고 유망 벤처기업에 한해 투자하는 구조

【 벤처 캐피탈 투자 체계 】



문 제 점

○ 중소·벤처기업 투자 실효성 미흡

- 중소·벤처기업 투자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가과제이지만 사모투자라는 규제로 인해 소수의 고액 자산가들에게만 허락된 폐쇄적 금융시장
- 증권·자산운용업체가 신탁이나 사모펀드를 결성, 벤처펀드 투자에 나서고 있으나, 이는 대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주로 VIP고객을 대상
- 금융권에서는 투자자 부족이 가장 큰 문제라며, 투자자별 투자금액이 제한된 상황에서 투자자마저 적어 펀딩 성공에 어려움이 있다고 함

- 모태펀드인 한국벤처투자(주)는 창투조합 펀드에 50% 투자하고 투자 기준은 상장기업 20%이하, 초기 기업은 40% 이상이면 투자 지원
- 사모펀드인 창업투자조합의 경우 자체 심사역이 중소·벤처기업 투자 대상 선정 시 1순위 대표이사 능력, 2순위 시장성, 3순위 미래가치 순으로 선정(신기술 평가 소홀, 3% 정도만 투자 수혜)
- 벤처기업 인증기관 : 기술보증기금 90%, 중소기업진흥공단과 벤처캐피탈협회에서 10% 인증

○ 기관 투자자 중심의 투자로 벤처기업 활성화 미흡

- 벤처캐피탈 등 기관투자자 중심의 창업투자금융은 창업 3년 이내 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비중이 30%선에 불과하고, IPO(Initial Public Offering, 비상장 기업이 코스닥 상장을 위해 주식 관련 재무내용을 공시하는 것)가 얼마 남지 않아 수익 실현이 빠른 7년 초과 기업에 대한 투자비중이 45%선에 이르고 있음
- 자산규모 1,000억 이상 벤처기업 중 벤처투자를 전혀 받지 못한 기업은 56%이고, 창업 7년 이내를 기준으로 하면 73%에 이름(2015년 기준)

3 공모창업투자조합 관련 하위 법령체계 미흡

현 운영실태

- 2007.8.31.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창업지원법, 벤처기업육성법상에 공모창업투자조합 관련 규정이 신설되었으나 실제 운영되고 있지 않음

※ 창업지원법 제47조의2(공모창업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 벤처기업육성법 제4조의8(공모한국벤처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문 제 점

- 공모조합 관련 하위법령 미정비로 중소·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미흡
 - － 창업지원법, 벤처기업육성법상에는 조합 결성에 대한 근거를 두고 있으나, 시행령 등 하위법령 미정비
- 주관부처 및 중소기업 관련 단체 등에서 공모조합(창업투자조합, KVF)의 활성화 노력 미흡
 -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중소기업 단체에서는 공모에 참여하는 일반인에 대한“투자자 보호문제”해소가 관건

- 창업지원법이나 벤처육성지원법에 규정된 공모창업투자조합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공모조합 결성 관련 하위 법령을 정비하여야 하고, 공모조합, 일반 금융회사간 상호 거래할 수 있는 형태로 추진 필요 (중소기업, 벤처기업 주식 지분을 금융회사가 팔도록 조치)

- 중소기업, 벤처기업은 주로 사모펀드에서 투자하고 있음(중기청)
- 최근 금융위는 신기술(성장사다리 벤처 사모펀드) 부분에 관여함
- 여유 자금이 있는 개인 투자자들은 크라우드 펀드 200만원 한도액 때문에 유망 중소기업, 벤처 기업에 투자 의향이 있어도 실제 투자할 수 없는 구조임

4 온라인 소액투자 및 개인투자조합 제도 운영 미흡

현 운영실태

- 자본시장법(크라우드펀딩 제도)에서는 금융시장 투자 위험성을 감안하여 일반 투자자에게는 투자한도*를 제한하고 있음

* 일반투자자 기준 : 연간 기업당 200만원, 총 500만원(현재 온라인 중개 개인 투자자들의 기업당 투자금액은 평균 111만원 정도임)

문 제 점

○ 온라인 소액투자(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정보제공 미흡

- 투자자가 창업 기업의 가치 및 발전 가능성을 평가해야 하는데, 이런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가 부족하며, 투자대상기업을 검증할 수 있는 인프라 부재
-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사가 투자대상기업의 기술성과 사업성을 자체적으로 평가하지 못하도록 하였지만, 이는 크라우드 펀딩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음

- 2016년 1월 본격 시행된 크라우드 펀딩은 총 121개 기업에 172억의 투자자금을 조달함. 이는 크라우드 펀딩을 실시한 총 261건 중 46%가 성공한 것으로, 목표액(373억 7천만원) 대비 46%달성한 것임
※ 한국예탁결제원 자료, 2017.1.24. 기준
- 온라인소액중개업자는 당초 5개사에서 14개로 증가하였지만, 월평균 펀딩 건수는 19.1건, 성공건수는 8.9건. 2016년 11월에 펀딩건수가 46개까지 증가했으나 성공건수는 13건으로 성공률은 28.3%에 그침

○ 개인투자조합 결성 및 등록신고 처리업무 미흡

- 개인투자조합의 결성 및 등록 신고처리는 감독청의 심사인원 부족으로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이 걸려야 등록이 이루어지는 상황임

○ 또한 크라우드펀딩 모금한도를 7억원으로 제한하고, 1년간 전매를 금지하며, 투자자의 연간투자한도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음

IV. 개선방안

1 중소·벤처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하위 법령 정비

- 공모창업투자조합(이하‘공모조합’)과 관련 현행 법체계를 유지하면서 공모조합이 원활히 운용될 수 있도록 정비

- ① 공모조합 결성, 공모심사, 공시, 투자자보호 등 관련 내용 구체화
－ (법령 정비) 자본시장법을 준용하여 관련 법령 세부 내용 구체화
(예시) 창업지원법 및 벤처기업법 시행령, 서식 등

- 공모절차 관련(자본시장법 제119조 내지 124조)
 - 공모신고서 심사의 절차(제출 후 효력발생기간 등)
 - 공모신고서 심사 주체(중기청 vs. 금융위)
 - 공모신고서 심사주체의 권한(정정요구 등 시정조치권한)
 - 공모신고서 서식(창투조합의 특성을 고려하여 어떤 정보를 공시하게 할 것인지)
 - 투자자에 대한 공시방법(DART 이용 전자공시 vs 별도 창구)
- 조합재산의 운용 및 운용주체(창투사)의 영업행위 관련(자본시장법 제80조 내지 제95조)
 - 특정 회사 또는 업종에 대한 투자 등 자산운용상의 한도
 - 대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제한
 - 환매기준 및 환매요구에 대비하기 위한 유동성 보유 의무 등 환매안전장치
 - 금지되는 불건전영업행위의 유형
 - 성과보수 및 의결권행사 등 재산운용에 따른 부수적 사항 등
- 손해배상 등 사후책임 관련(자본시장법 제48조, 제124조 내지 126조)
 - 허위기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및 형사책임 등 부과 방안
 - 조합증권의 판매자의 책임(ex. 통상 펀드의 경우 자산운용사가 설정하고 운용하지만 일반투자자에 대한 판매는 은행 또는 증권회사 창구에서 이루어지며, 동 판매자는 자본시장법상 각종 설명의무 및 미이행에 대한 책임을 부담)

- (공모조합 기본요건) 공모조합 결성 및 운용을 위해서는 출자금액, 출자자수 및 조합운용에 관한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예시) 결성 및 운용요건 (현행 vs. 개선안)

구 분		창업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요건 (현 행)	공모창업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요건 (개 선)
결성	출자금	출자금 총액이 20억원 이상 (KVF는 30억원 이상)	-
	1좌당 최소금액	100만원	-
	조합원수	유한책임조합원의 수가 49인 이하	제한 없음
	GP의 출자비율	출자금 총액의 100분의 1 이상	제한 없음
	존속기간	5년이상	-
	주요출자자	기관 및 법인	기관 및 법인, 개인(추가)
운용	투자대상	중소 및 벤처기업	완화필요
	투자의무	비상장 중소·벤처기업 등에 대하여 3년내에 40%이상 투자유지	완화필요
	투자제한	금융, 보험, 부동산, 숙박, 음식점, 무도장, 골프장, 스키장, 도박장 등	-
	해외투자 한도	40%	-

* 창업지원법 제47조의2(공모창업투자조합에 관한 특례)에서는 자본시장법상 일부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공모조합 등록하는 경우 사전에 금융위원회와 협의토록 규정

2 중소·벤처기업 온라인 및 개인투자 관련 규제 개선

① 온라인 소액투자(크라우드 펀딩) 정보 공지 및 한도액 조정

- 단순 온라인을 통해 투자자 모집 말고 이메일과 SNS를 통한 공지 가능하도록 명확히 규정 (투자자 규모 관련)
- 1개 기업에 대한 투자모금액 규모(연간 2천만원) 확대 등

(예시) 자본시장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 자본시장법 제118조16(온라인 소액증권 발행인의 조치사항 등)
 - 인터넷 홈페이지([이메일과 SNS기능 포함](#))에 게재하여야 한다.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4조4(온라인 소액투자 중개를 통한 증권발행의 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이메일과 SNS기능 포함](#)
-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1개 기업에 대한 투자모금액 규모)
 - 조합당 기준(300만원~1,000만원/기업별 2,000만원/연간) 조정

② 개인투자조합 결성 신고처리 기간 명확화

－ 신고 접수 처리기간 단축으로 일반 국민들의 직접 투자 활성화

(예시) 창업지원법, 벤처기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개정

- 공개인투자조합 결성 신고처리 기간 명시
 - 개인투자조합 결성 신고 처리기간을 명확히 하여 기한 내 처리(개인투자조합 결성 등록 신고 접수 후 1~2주 내 처리)

【 기대효과 】

- 다양한 형태의 투자재원(회사계정, 조합계정 등)에 대한 시장수요 창출 기대
- 유한책임조합원(LP)의 출자금 유동성 제고 및 다양한 형태의 출자자 참여 유도

IV. 조치사항

□ 대상기관 :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개선과제명	세부개선 과제	관계법령	소관부처	조치기한
① 중소.벤처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하위 법령 정비	① 공모조합 결성, 공모심사, 공시 등 관련 내용 구체화	창원지원법 (벤처기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자본시장법	중소기업청 금융위	'17.12.
② 중소.벤처기업 온라인 및 개인 투자 관련 규제 개선	① 온라인 소액투자(클라우드 펀딩) 정보 공지 및 한도액 조정 - 이메일과 SNS통한 안내 강화 - 1개 기업에 대한 투자모금액 규모 확대(연간 2천만원)	자본시장법 시행령	금융위	'17.12.
	② 개인투자조합 결성 및 등록신고 개선 - 1~2주일내 신고 처리	벤처기업법 시행령	중소기업청	'17.12.

붙임1

벤처기업 관련 현황

1. 벤처인기업 현황 : 벤처기업수 : 33,387개

○ 유형별

구분	벤처투자기업	연구개발기업	기술평가보증기업	기술평가대출기업	예비벤처기업	합계
업체수	1,169	1,944	26,871	3,329	74	33,387
비율(%)	3.5	5.8	80.5	10.0	0.2	100

○ 지역/업종별

구분	제조업	정보처리 S/W	연구개발 서비스	건설운수	도소매업	농·어·임·광업	기타	합계
서울	2,359	3,322	150	137	372	4	1,228	7,572
부산	1,618	236	16	45	28	0	232	2,175
울산	355	53	2	8	2	0	53	473
대구	1,279	176	6	17	27	2	54	1,561
경북	1,482	69	15	15	8	5	76	1,670
광주	621	81	6	4	18	2	54	786
전남	545	34	7	21	6	5	52	670
대전	832	248	25	31	15	3	91	1,245
충남	1,013	41	8	12	1	6	68	1,149
경기	8,340	911	93	138	154	21	584	10,241
인천	1,311	80	13	17	22	0	62	1,505
강원	455	49	16	23	8	9	58	618
충북	823	42	8	13	5	4	52	947
전북	608	50	8	19	11	6	42	744
경남	1,615	58	3	12	4	7	84	1,783
제주	85	29	3	2	8	4	31	162
세종	62	13	1	4	1	0	5	86
계	23,403	5,492	380	518	690	78	2,826	33,387

○ 연도/월별 증감현황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누계
'98년도	-	-	-	-	304	427	413	140	230	145	160	223	2,042
'99년도	91	252	182	334	243	269	310	285	248	259	268	151	4,934
2000년도	278	334	458	543	563	7	618	519	384	311	382	-533	8,798
2001년도	350	370	460	420	364	-839	508	341	250	198	145	27	11,392
2002년도	-106	-52	-176	-319	-158	-399	-349	-122	-141	-144	-320	-328	8,778
2003년도	-11	-77	-157	-59	-42	-144	-165	-89	-77	30	-199	-86	7,702
2004년도	-95	-66	-77	154	280	304	168	115	128	163	-1,343	534	7,967
2005년도	63	121	159	215	188	246	59	72	138	95	60	349	9,732
2006년도	121	217	346	280	469	378	244	197	214	166	-497	351	12,218
2007년도	-168	148	258	167	79	485	-31	256	215	289	179	-80	14,015
2008년도	-34	90	112	189	-150	-475	450	201	185	378	47	393	15,401
2009년도	338	663	449	551	112	165	536	318	475	72	5	-192	18,893
2010년도	46	-95	200	415	812	1,112	348	589	624	510	602	589	24,645
2011년도	237	450	1,092	572	-283	-400	174	16	-126	-16	15	-228	26,148
2012년도	77	-137	-571	70	664	325	543	277	258	222	186	131	28,193
2013년도	249	321	-32	469	-101	-334	609	-38	-292	148	-88	31	29,135
2014년도	224	-369	-514	154	82	-169	492	161	122	222	15	355	29,910
2015년도	143	24	3	251	-229	78	347	-102	39	138	233	425	31,260
2016년도	99	-155	33	25	210	294	329	356	17	383	286	223	33,360
2017년도	27												33,387

※출처: 벤처인(http://www.venturein.or.kr/venturein/go_page.jsp)

※벤처기업수 2만개 돌파: 2010.5.19.(20,044개) ※벤처기업수 3만개 돌파: 2015.1.13.(30,021개)

2. KOSDAQ 현황

□ KOSDAQ 시장과 유가증권시장 비교

구분	코스닥시장	벤처기업부	중견기업부	코스닥 벤처기업부 비중	유가증권시장
기업수(개)	1,214	281	484	23.1%	890
거래량(천주)	727,041	84,793	520,447	11.7%	288,275
거래대금(십억원)	2,484	395	1,450	15.9%	4,596
시가총액(십억원)	198,116	32,470	56,963	16.4%	1,338,409

* KRX-국내지수-유형별분포-상장종목수- 코스닥지수(외국주 포함)

** 2014. 08월부터 구성종목수에서 상장종목수로 변경

□ KOSDAQ 지수

구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연월말 (벤처)	1204.7 (-)	972.5 (-)	751.8 (704.9)	2561.4 (6081.8)	525.8 (915.3)	722.1 (1259)	443.60 (676.6)	448.70 (824.1)	380.33 (617.88)	701.79 (1,110.79)	606.15 (865.15)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1
연월말 (벤처)	704.23 (874.68)	332.05 (387.24)	513.57 (701.10)	510.69 (695.30)	500.18 (1,106.78)	496.32 (1,028.78)	499.99 (1,051.37)	542.97 (1,267.39)	682.35 (1,716.63)	631.44 (1,627.00)	616.13 (1,532.30)

* 2004.01.26, 코스닥지수 기준단위를 상향조정(100-> 1000, 기준시점 (96.7.1)부터 소급적용

** 2011. 05월2일 코스닥시장 소속부제도를 기존 벤처, 일반기업부에서 우량기업부, 벤처기업부, 중견기업부, 신성장기업부로 4개 소속부로 분류

※월말 종가지수 표기

3. 벤처캐피탈 투자 현황

□ 창업투자회사

(단위: 개)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신규(취소)	3(20)	0(11)	1(13)	0(3)	13(11)	7(10)	5(9)	12(9)
등록누계	128	117	105	102	104	101	97	100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1
신규(취소)	13(10)	9(7)	6(6)	3(7)	6(4)	14(2)	13(8)	-(3)
등록누계	103	105	105	101	103	115	120	117

* 벤처투자정보센터 시장동향 정보제공 양식변경으로 '납입자본금' 2014년 11월부터 확인불가

□ 신규투자

(단위: 억원, 개)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신규투자	6,177	6,306	6,044	7,573	7,333	9,917	7,247	8,671
(업체)	(768)	(630)	(544)	(635)	(617)	(615)	(496)	(524)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1
신규투자	10,910	12,608	12,333	13,845	16,393	20,858	21,503	751
(업체)	(560)	(613)	(688)	(755)	(901)	(1,045)	(1,191)	(82)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16조등에 따라 투자실적으로 인정되는 투자만 포함한 금액임

** 벤처투자정보센터 시장동향 정보제공 양식변경으로 '투자잔액(업체)' 2014년 11월부터 확인불가

□ 업력별 신규투자현황

(단위: 억원, 개)

구분	초기	중기	후기	합계
2009년	2,476(179)	2,601(172)	3,594(195)	8,671(524)
2010년	3,192(207)	2,904(175)	4,814(207)	10,910(560)
2011년	3,722(235)	3,296(160)	5,590(244)	12,608(613)
2012년	3,696(300)	3,137(178)	5,500(248)	12,333(688)
2013년	3,699(354)	3,259(212)	6,887(215)	13,845(755)
2014년	5,045	4,069	7,279	16,393
2015년	6,472	5,828	8,558	20,858
2016년	7,909	6,156	7,438	21,503
2017년 1월	286	227	238	751

* 벤처투자정보센터 시장동향 정보제공 양식변경으로 '기업수' 2014년 11월부터 확인불가

□ 코스닥 신규상장

(단위: 개,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1
IPO수	50	55	20	34	40	57	48	2
VC투자기업	32	37	14	26	26	46	33	2
비중	64.0	67.3	70.0	76.5	65.0	80.7	68.8	100.0

* 재상장, 외국계, SPAC 제외

** 벤처투자정보센터 시장동향 정보제공 양식변경으로 '기업수' 2014년 11월부터 확인불가

※ 출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투자정보센터

4. 벤처 무역 현황

□ 연도별 벤처수출 현황

(단위: 억불, %)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총수출 (증가율)	1,722.6	1,504.3 (-12.7)	1,642.7 (8.0)	1,938.1 (19.3)	2,538.4 (31.0)	3,844.1 (12.0)	3,254.6 (14.4)	3,714.9 (14.1)	4,220.0 (13.6)
벤처수출 (증가율)	48.5	55.5 (14.5)	59.6 (7.3)	70.7 (18.7)	90.2 (27.4)	103.2 (14.5)	109.7 (6.3)	131.4 (19.7)	132.9 (10.6)
비율	2.81	3.69	3.67	3.64	3.55	3.63	3.37	3.53	3.15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1
총수출 (증가율)	3,635.3 (-13.9)	4,663.8 (28.3)	5,552.1 (19.0)	5,480.7 (-1.3)	5,596.3 (2.1)	5,726.6 (2.3)	5,269.0 (-8.0)	4,954.7 (-5.9)	4,031.1 (11.2)
벤처수출 (증가율)	116.4 (-12.4)	158.5 (36.1)	177.4 (11.9)	177.1 (-0.2)	152.4 (-13.9)	166.9 (9.5)	171.2 (2.5)	180.7 (5.5)	134.4 (8.4)
비율	3.20	3.40	3.20	3.20	2.70	2.92	3.25	3.65	3.33

□ 벤처수출 비교

(단위: 천불, %)

구분		당월			누계		
		2016.1	2017.1	증감률	2016.1	2017.1	증감률
총수출		36,260,420	40,312,729	11.2	36,260,420	40,312,729	11.2
벤처기업	수출	1,236,561	1,340,953	8.4	1,236,561	1,340,953	8.4
	비중	3.4	3.3		3.4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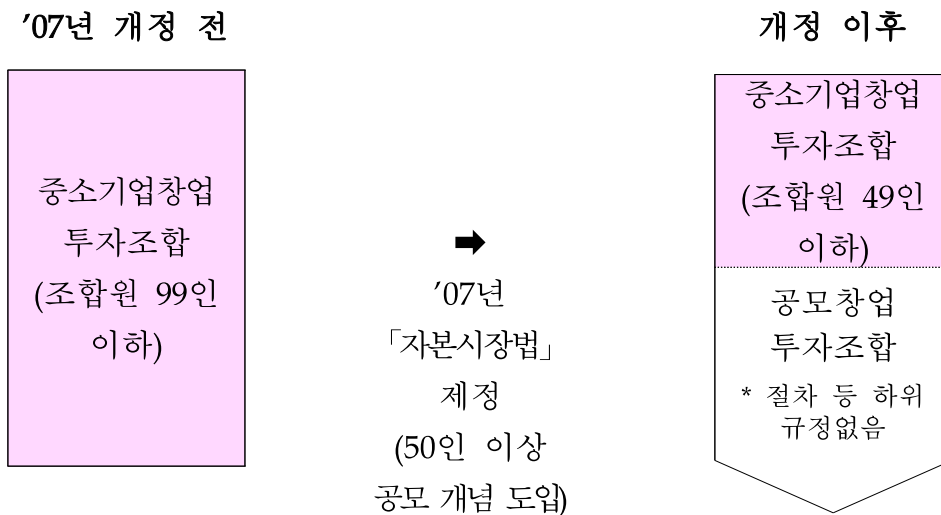
※ 출처: 한국무역협회

- 무역협회 벤처동향조사기준(2014.8 홈페이지 개편으로 증감률 추가)
- 벤처기업 대륙권별 수출(누계) 현황 확인불가(2016.4 무역협회 유료회원사 전용 서비스로 변경)

붙임 2

공모창업투자조합 관련 법령 개정사유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 전후 비교 〉



〈 관련 법령 제·개정 연혁 〉

법령명	제정	개정 (공모조합 규정)	개정 사유
「중소기업창업지원법」	'86. 5.	'07. 8.	「자본시장법」 제정에 따른 타법개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벤처기업법」)	'97. 8.	'07. 8.	「자본시장법」 제정에 따른 타법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법」)	'07. 8.	-	-

※ 「벤처기업법」 상 ‘한국벤처투자조합’ - ‘공모한국벤처투자조합’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상 ‘중소투자조합’ - ‘공모조합’ 관계와 동일하며, '07년에 같은 형태로 개정되었음

※ 공모한국벤처투자조합도 현재 실적 없음

○ 벤처 인큐베이팅(incubating)

- 예비 벤처창업자나 스타트업이 사업에 필요한 기본적인 인프라는 물론 법률, 회계, 자금, 인력, 홍보 등과 관련한 토털 서비스 제공 및 지원

○ 벤처 액셀러레이팅(accelerating)

-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의 지속적인 성장·안착을 위하여 자금 투자를 실시하고, 사업모델 및 기술·상품 개발, 시설 및 장소 확보, 홍보, 해외진출 등을 지원

○ 스타트업(start-up, 초기창업자)

- 설립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신생 벤처기업을 의미하며, 법령에서는 ‘초기창업자’로 번역

○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

- 특정 개인, 조직의 활동이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목표액과 모금 기간을 정해놓고 인터넷(웹, 모바일, SNS 등)을 통해 다수의 개인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해 기금을 마련하는 방식이며, 소셜 펀딩(social funding)이라고도 불림

○ 공모

- 신규로 발행되는 증권에 대하여 50인 이상을 대상으로 증권의 취득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

※ 「자본시장법」 불특정다수 일반투자자의 기준을 50인 이상(권유받는 자 기준)으로 규정

○ 사모

- 기관투자자나 특정 개인에 대한 개별적 접촉을 통해 자금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전문투자자를 제외한 투자자 수가 49인 이하로 제한

※ 「자본시장법」에서는 공모 이외의 방식으로 투자를 받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에서는 투자자 49인 이하로 제한

창업지원법

제20조(조합의 결성 등) ① ~ ② (생략)

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공모창업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1인으로 한다. <신설 2009.12.30>

④ ~ ⑥ (생략)

제43조(등록의 취소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10. (생략)

1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제21조제4항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를 위반하거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같은 법 제4조의4제2항을 위반한 때(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공모창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를 포함한다)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으로 한정한다)을 위반한 때

② ~ ⑦ (생략)

제47조의2(공모창업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43조까지, 제48조,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0조부터 제65조까지, 제80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제2호·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6조부터 제95조까지, 제181조부터 제183조까지, 제184조제1항·제2항·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85조부터 제187조까지, 제218조부터 제223조까지, 제229조부터 제249조까지, 제249조의2부터 제249조의22까지,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 제415조부터 제425조까지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은 공모창업투자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창업투자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창업투자회사(공모창업투자조합이 아닌 창업투자조합만을 결성하여 그 업무를 집행하는 창업투자회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7.24, 2015.7.31>

② 중소기업청장은 공모창업투자조합 또는 창업투자회사(공모창업투자조합이 아닌 창업투자조합만을 결성하여 그 업무를 집행하는 창업투자회사를 제외한다)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금융위원회는 공익 또는 공모창업투자조합의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모창업투자조합 및 창업투자회사(공모창업투자조합이 아닌 창업투자조합만을 결성하여 그 업무를 집행하는 창업투자회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의 원장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 금융위원회는 공모창업투자조합 및 창업투자회사(공모창업투자조합이 아닌 창업투자조합만을 결성하여 그 업무를 집행하는 창업투자회사를 제외한다)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으로 한정한다)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42조제1항, 제43조제1항·제3항·제6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중소기업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고, 중소기업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그 조치내역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8.6, 2015.7.31, 2016.5.29> [본조신설 2007.8.3]

제4조의3(한국벤처투자조합의 결성 등) ① ~ ③ (생략)

④ 제3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제4조의8에 따른 공모한국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 업무 집행조합원은 1인으로 한다. <신설 2010.1.27, 2016.5.29>

⑤ ~ ⑧ (생략)

제4조의8(공모한국벤처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43조까지, 제48조,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0조부터 제65조까지, 제80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제2호·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6조부터 제95조까지, 제181조부터 제183조까지, 제184조제1항·제2항·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85조부터 제187조까지, 제218조부터 제223조까지 및 제229조부터 제249조까지, 제249조의2부터 제249조의9까지,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은 공모한국벤처투자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국벤처투자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7.24., 2015.7.31., 2016.5.29.>

② 중소기업청장은 공모한국벤처투자조합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금융위원회는 공익 또는 공모한국벤처투자조합의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모한국벤처투자조합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고, 금융감독원의 원장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 금융위원회는 공모한국벤처투자조합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으로 한정한다)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중소기업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고, 중소기업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그 조치내역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5.7.31., 2016.5.29.>

[본조신설 2007.8.3.]

[제4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4조의8은 제4조의9로 이동 <2016.5.29.>]